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련 3324

제안년월일 : 2025년 12월 18일
제 안 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임명 · 위촉 주체를 위탁기관으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○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임명 · 위촉 권한을 시장으로 한정하는 표현을 삭제함(안 제10조제2항).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2항 중 “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”를 “사람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(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생 략)	제10조(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	제10조(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 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.	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1. 당연직 위원: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. 위촉직 위원 가. 영화 감독, 작가 등 영상산업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. 영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임직원 다. 그 밖에 서울영화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·2. (개정안과 같음)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	③ ~ ⑨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”을 “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위촉위원”을 “위촉직 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소관 부서장이 된다”를 “담당 사무관이 맡는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제1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4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세부 운영에”로 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·본부·국장

2. 위촉직 위원

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

나.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
다. 그 밖에 시장이 영상진흥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

인정하는 사람

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.

⑩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⑪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(분과위원회)를 둘 수 있다. 소위원회(분과위원회)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⑫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.

⑬ 영상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의2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에”를 “시에”로, “한한다)”를 “한정한다)”로 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영화센터를 설치할 수

있으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상영관 관람료 등)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의 상영관 관람료를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5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
6. 그 밖에 영화센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위탁기관이 상영관을 단체 등에 대관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영상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, 수강료 등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

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

2. 위촉직 위원

가. 영화 감독, 작가 등 영상산업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나. 영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임직원

다. 그 밖에 서울영화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서울영화센터의 위치(제9조제3항 관련)

이름	주소
서울영화센터	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8

[별표 2]

상영관 관람료 부과기준 (제9조의2제1항 관련)

구 분	관람료 부과기준
• 상영관 관람료	개인: 5,000원 ~ 15,000원
	단체(10인 이상): 개인 관람료의 80% 내외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·2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----- --- 뜻은 -----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생 략)	제4조(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----------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---------- 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,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·국·본부장이 되며, 위촉위원은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1. 당연직 위원: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·본부·국장 2. 위촉직 위원 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나.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다. 그 밖에 시장이 영상진흥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	⑤ 위촉직 위원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

기기간으로 한다.	-.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영상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.	⑥ ----------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.
<신 설>	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<신 설>	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신 설>	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.
<신 설>	⑩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<신 설>	⑪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(분과위원회)를 둘 수 있다. 소위원회(분과위원회)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<신 설>	⑫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

	다.
<신 설>	⑬ 영상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	⑭ ---------- 세부 운영에 ----------.
제8조의2(영상위원회 지원)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·허가된 비영리법인 영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(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).	제8조의2(영상위원회 지원) ① ---------- 시에 ---------- 한정한다)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9조(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) ①·② (생 략)	제9조(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영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<신 설>	제9조의2(상영관 관람료 등)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의 상영관 관람료를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

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5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6. 그 밖에 영화센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위탁기관이 상영관을 단체 등에 대관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	④ 시장은 영상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, 수강료 등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제10조(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생 략)	제10조(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.	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 당연직 위원: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. 위촉직 위원 가. 영화 감독, 작가 등 영상산업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. 영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임직원 다. 그 밖에 서울영화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[별표 1] 서울영화센터의 위치(제9조제3항 관련)

이름	주소
서울영화센터	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8

<신 설>

[별표 2]

상영관 관람료 부과기준 (제9조의2제1항 관련)

구 분	관람료 부과기준
• 상영관 관람료	개인: 5,000원 ~ 15,000원
	단체(10인 이상): 개인 관람료의 80% 내외